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주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287

발의연월일: 2021. 4. 2.

발 의 자:전주혜·김도읍·조수진

허은아 • 유상범 • 윤창현

김예지 • 유의동 • 추경호

이채익 · 김승수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9년 2월 「공직자윤리법」개정으로 모든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. 다만, 개정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기존과 같이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재산을 등록하도록 함.

즉, 개정 법 시행 후, 신규로 재산등록을 하는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 대상으로 하나,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시부모의 소유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대해,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양성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, 과도적 조치인 경과조치 규정을 둔 지도 10 년 이상이 지나 개정 내용이 정착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것으 로 보여진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, 2009년 2월 이전에 재산등록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삭제하여 모두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, 등록의무자 간 형평성 확보 및 양성 평등 원칙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함(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).

법률 제 호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	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
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	<u><</u> 삭 제>
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	
을 한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	
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	
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	
<u>에 따른다.</u>	